

報 道 參 考 資 料

題目：다수공급자계약제도(MAS) 등 정부조달제도개선 추진

主要内容

□ 정부는 04.12.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업무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율화 등에 부응하기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, 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

□ 주요 내용을 보면

○ 조달청이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(MAS)*를 도입하여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

* MAS(Multiple Award Schedule) : 품질, 성능, 효용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○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을 2010년 까지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하여 지방재정 자율화에 기여

* 축소·폐지일정: 200억원미만(05.1)→500억원미만(07.1)→ 완전폐지(2010.1)
(현행 의무위탁 : 100억원 이상 PQ 및 턴키공사)

○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의 납입기한을 단축하여 조달청의 회전자금의 회전을 제고(현행 30일→15일로 단축)

* 조달회전자금이 약 3000억원 정도 확대되는 효과

※ 세부내용: 별 첨

資料 生産課 : 財政經濟部 會計制度課 TEL : 2110-2381
(과장 장훈기, 사무관 강환덕)

財政經濟部 國庫局長
公 報 官

<첨부>

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1. 다수공급자계약제도(MAS) 도입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○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품질·성능·효율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최고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
<개정사유>

- 각 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향상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

※ MAS 세부설명자료: 별지 참고

2. 조달물자대금의 납입기한 단축

현 행	개 정 안
○ 납입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	○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입

<개정사유>

- 조달 물자대금 납입기간을 단축(현행 30일→15일)하여 조달회전자금의 회전을 제고

* 현행 12회전→24회전, 조달회전자금 3000억원 확대효과

* 확대된 회전자금은 비축물자 재고물량 확대(현행 20일분→30일분)와 조달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
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위탁계약 단계적 축소·폐지

현 행	개 정 안
○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 대상 - PQ대상 공사(100억원이상) - 턴키, 대안입찰	○ 위탁대상계약의 단계적 축소·폐지 - 05.1: 200억미만 PQ대상공사 제외 - 07.1: 500억미만 PQ대상공사 제외 - 08.1: PQ대상 공사 전부 제외 - 10.1: 대안입찰, 턴키대상 공사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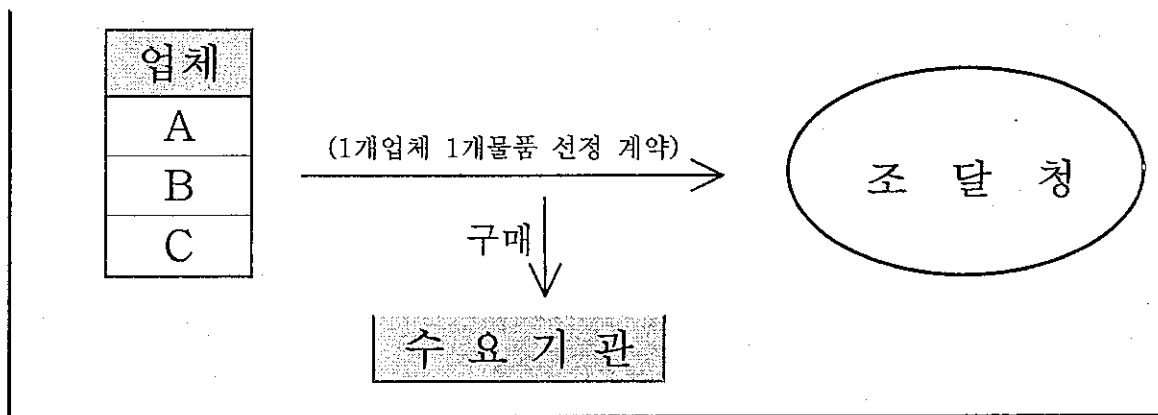
<개정사유>

-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조달 자율화 추진 시책에 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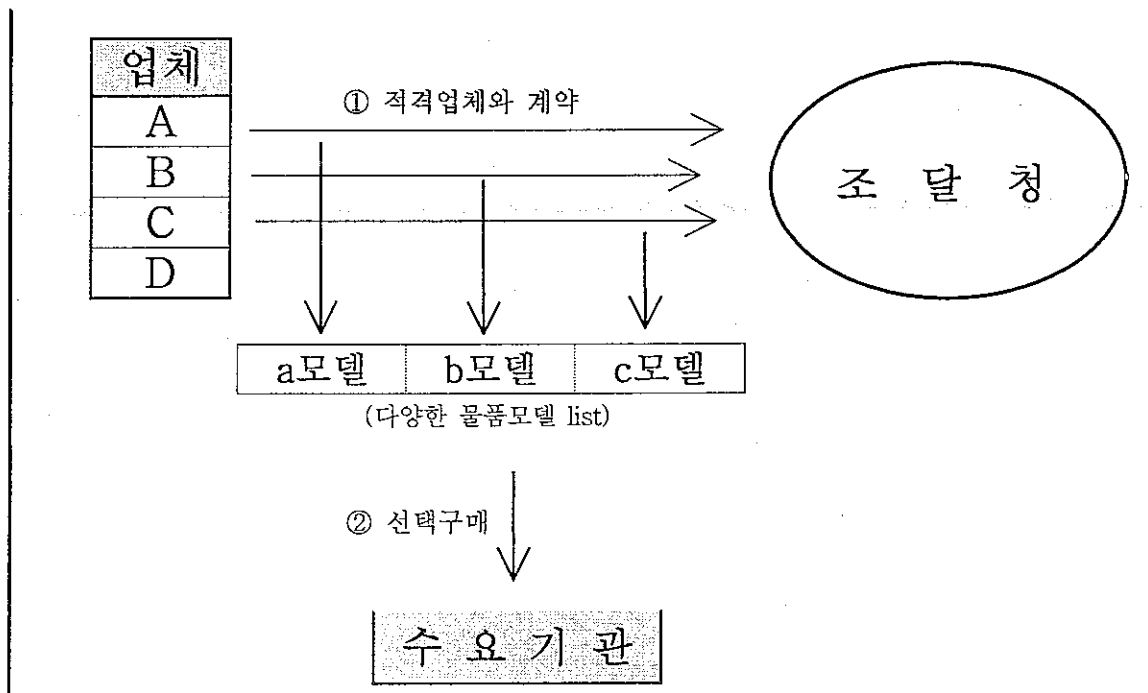
(별지)

다수공공급자계약제도(MAS)에 의한 구매절차

《기존 제도》



《MAS 제도》



※ ①단계: 정부는 모든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, 적격성이 평가된 업체에게 최저고객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구매가격을 결정

②단계: 정부기관등 수요기관은 품질, 가격, 성능, 인지도, A/S 등 Best value에 의하여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